

#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3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3월 일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제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조정하고,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차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적기에 반영함으로써,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하남시 예산 집행 및 시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 변경(안 제4조제2호)
- 나.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11월 20일”을 “12월 1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50조”를 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”를 “법 제14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정례회 집회)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20일</u>에 집회한다.</p> <p>제5조(정례회 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50조</u>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49조 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<u>법 제142조</u>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<p>제4조(정례회 집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12월 1일</u> ----- -----</p> <p>제5조(정례회 심의) ① ----- ----- <u>법 제49조제1항</u>의 <u>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</u>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법 제142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